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2.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52호로 2022년 1월 2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행정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안 제2조): 1,486명 → 1,48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454명 → 1,457명

나. 직급별 정원표(별표3)

1) 총 계: 1,486명 → 1,489명

2) 일반직계: 1,481명 → 1,484명

3) 6급 이하 소계: 1,403명 → 1,406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행정인력 수요증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정원 총수가 1,486명에서 1,489명으로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이 1,454명에서 1,457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음.
- 안 별표3에 따르면 증원된 3명은 일반직 6급 이하 직원으로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으로 배치되어 선별진료소 운영 및 역학조사 업무 등 보건소 수행 업무에 한정 배치되어 근무하게 됨.

※ 선별진료소 운영 : 검체 및 검사 관련 업무, 행정업무

※ 역학조사 : 확진자·접촉자 관련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입력 및 관리업무, 자가격리 관련 업무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보건소 인력소진 문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규인력을 확충시키는 것으로서 인력확보를 위해 시기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세출예산 순증가 (인건비)
 -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는 '1,486명'을 '1,48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1,454명'을 '1,457명'으로 한다
2. 비용추계 기준: 일반직 인건비
 - 채용 인원: 3명(보건9급 3)
 - 비용추계기간: 9개월(2022. 3. ~ 12.)
 - 비용추계내역: 기본급+직급보조비+국민건강보험금+연금부담금+수당
3.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96,689	
기본급(봉급)	47,204	9급 3호봉 기준
직급보조비	3,915	월 직급보조비: 9급 145천원
국민건강보험금	2,745	보수월액의 3.495% 부담
연금부담금 등	15,438	연금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수 당	27,387	- 가족수당 : 1,44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13,125천원 - 정액급식비 : 3,780천원 - 명절휴가비 : 6,294천원 - 연가보상비 : 1,399천원 - 기술업무수당 : 1,350천원